

금융투자소득세 (2025.1.1. 이후)

1. “금융투자소득”이란?

-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(양도, 환매 등)을 말합니다. (단,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)

2.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- 금융투자소득을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(1) 양도등으로 발생하는 소득	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신주인수권 권리 소멸 (상장주식, 비상장주식, 국외주식)
	② 채권 등의 양도 및 상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(회사채, 국공채, CP 등)*
	③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(2)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	집합투자증권(펀드)의 양도·환매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·해산으로 발생한 이익 ※분배금은 배당소득
(3)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	① 파생결합증권(ELS, DLS, ETN, ELW 등)으로부터의 이익
	②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(선물, 선도, 옵션, 스왑 등)**

* 파생결합사채(ELB, DLB)으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임 [소법 §16①(2)의2]

**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은 이자 및 배당소득임 [소법 §16①(13), §17①(10)]

3. 투자계약증권이 무엇인가요?

투자계약증권이란,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,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.

4.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무엇인가요?

<p>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란?</p>	<p>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로서, 펀드라고도 합니다.</p> <p>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,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.</p>
<p>집합투자기구의 종류</p>	<p>①투자신탁 ②투자회사 ③투자유한회사 ④투자합자회사 ⑤투자유한책임회사 ⑥투자합자조합 ⑦투자익명조합을 말합니다. [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].</p>
<p>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?</p>	<p>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하며, 일반적인 정의는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,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배분 받은 것을 말합니다.</p>

5. 파생결합증권이 무엇인가요?

<p>의의</p>	<p>기초자산의 가격·이자율·지표·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,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. (ELS, DLS, ELW, ETN 등)</p>
<p>과세대상</p>	<p>기존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ELS, DLS의 이익은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되고, 또한 ELS, DLS의 양도,상환 등으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.</p>

6. 파생상품이 무엇인가요?

<p>의의</p>	<p>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·이자율·지표·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 (예: 선물, 선도, 옵션, 스왑, 차액결제거래(CFD))</p>
<p>과세방법</p>	<p>2024년말까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,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.</p>

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

1.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

2025.1.1.부터 시행 (2022.12. 소득세법 개정)

2. 금융투자소득세제의 특징

손익 통산	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합니다. 따라서 현행 배당 과세에서 무시되던 펀드 환매 손실등도 금투세제에서는 손익통산 효과로 전체적인 금투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
기본공제 적용	1그룹 금투소득은 연 5000만원 (국내상장주식등 매매이익등), 2그룹 금투소득은 연 250만원 (그 외 금투소득)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.
결손금 이월가능	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,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기본공제 그룹 기준

구분	그룹 구성 금융투자소득
1그룹 (5,000만원 기본공제)	①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양도소득 (KOSPI 등 주식시장에서 양도하는 것을 의미)
	② K-OTC 중소기업/중견기업 주식의 K-OTC 양도소득*
	③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 (국내 주식형 ETF 포함)
	④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
2그룹 (250만원 기본공제)	1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 (예 :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, 해외주식 양도, 펀드 이익 등)

* K-OTC BB 대상종목은 2그룹 : K-OTC 등록 및 지정종목이 아닌 비상장주권임[K-OTC BB 운영시행세칙 제3조]

4.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사항

가. 금융투자상품 손익의 과세대상 확대 및 재분류

<p>① 비과세소득 → 금융투자소득</p>	<p>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과세되지 않았던 종전과 달리,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.</p>
<p>② 배당소득 → 금융투자소득</p>	<p>종전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증권(ELS,DLS,ETN 등)의 이익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(분배금 제외)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.</p>
<p>③ 양도소득 → 금융투자소득</p>	<p>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됐던 주식의 양도, ELW의 이익, 파생상품의 이익 등이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,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.</p>

나. 기존 종합소득세제와는 별개로 신설된 과세제도 (분류과세)

<p>분류 과세</p>	<p>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,배당,사업,근로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.</p> <p>예를 들어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더라도,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.</p>
--------------	---

다.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및 과세자료 제출의무 신설

<p>2024년 이전</p>	<p>종전에는 배당소득 외에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었습니다.</p>
<p>2025년 이후</p>	<p>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, 금융투자상품 거래/보유명세서, 금투소득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반년 또는 연 단위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

